



2015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0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 ① 덤핑방지관세
- ② 상계관세
- ③ 일반특혜관세
- ④ 보복관세

[해설]

③ '일반특혜관세'는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4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한다.

법 제50조(관세율의 적용순위)

순 위	관세의 종류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 상계관세(법 제57조) • 보복관세(법 제63조) • 긴급관세(법 제65조)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법 제67조의2)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법 제68조)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 편익관세(법 제74조)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관세(법 제69조) • 할당관세(법 제71조) • 계절관세(법 제72조)
4순위	일반특혜관세(GSP, 법 제76조)
5순위	잠정세율
6순위	기본세율

[답] ③

0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 ② 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③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④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해설]

③ 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하지만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답] ③

0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 ①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④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해설]

영 제17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제의 가답안은 ①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이었으나 이 물품은 영 제17조 제5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②·③·④ 모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 물품
-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답] 정답없음

0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 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해설]

②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②

0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해설]

②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법 제38조(신고납부)

-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자율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답] ②

0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④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④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법 제100조(손상감세)

-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답] ④

0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 ① 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7항에 따라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 3, 7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1.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저작권 등”이라 한다)
 - 3. 「식물신종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
 - 4. 「농산물관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지리적표시권 등”이라 한다)
 - 5.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특허권
 -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 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 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수출입신고 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수출입신고된 물품
 -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 5. 제141조 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답] ①

0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부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 ③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행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④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 ② 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2항에 따라 해당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답] ②

0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영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 2.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 ② 통관표지 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답] ④

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 ②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 ③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 ④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해설]

②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는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이다.

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1~3항

- ①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 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ℓ),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향수	60밀리리터(mℓ)	

[답] ②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 ④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해설]

③ 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4.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 지났을 것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에 설치·운영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답] ③

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관세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해설]

- ① 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1항에 따라 관세법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답] ①

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 ④ 「관세법」 제240조에 제시된 수입 의제 대상만이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선용품은 수입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④

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 확인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영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1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부분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답] ②

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② 수출용원재료
- ③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④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해설]

- ④ 고가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답] ④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서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 등이 된 물품의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 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 ④ 관세청장(×) → 세관장(○)

법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답] ④

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수취인(×) → 통관우체국의 장(○)

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①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따른 결정(제258조)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답] ①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의 과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④ 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항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답] ④

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③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해설]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영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제1항
 ① 법 제1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답] ①

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② 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③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④ 60일 전(×) → 90일 전(○)

영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법 제164조 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답] ④

시대에듀X자몽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나보세요!



시대에듀 홈페이지 www.sdedu.co.kr

공시생 자몽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mongsidae>

공기출 자몽 게시판 <https://0gichul.com/jamong>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